"SAFER SHIPS, CLEANER SEAS"

중 앙 도 선 운 영 협 의 회

수 신 : 수신자 참조

참 조 :

제 목 : 도선선료 변경신고 수리 알림(이첩)

1.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-2889(2026.06.25.) 관련입니다.

2. 중앙도선운영협의회에서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, 물가상승 및 선박 노후화에 따른 개선 등 도선선 운영에 따른 운항 원가를 보전하고자 전체 도선구의 도선선 기본료를 약 8.9% 인상하기로 하고, 2026년 7월 1일자로 적용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.

3. 이에 따라, 붙임 문서와 같이 도선선료 변경신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수리되어 알려드리니,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관련 문서 사본 1부. 끝.

중 앙 도 선 운 영 협 의 회

위 원 장 조 용 화

수신자 : 각 지방도선운영협의회 위원장, 한국도선사협회장, 한국해운협회장,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장.

간 사 임계근

시 행 중앙도운협 제566호 (2026. 06. 25.) 접 수 ( )

우 07238)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8(오성빌딩 10층) / www.kmpilot.or.kr

전화 (02)784-6022 전송 (02)783-0931 / kmpilot@kmpilot.or.kr

해양수산부

해 양 수 산 부

수신 중앙도선운영협의회
(경유)
제목 도선선료 신고 수리 알림

1. 중도협-565(2026.6.16.)호와 관련됩니다.

2. 「도선법」 제21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귀 기관에서 제출한 도선선료 신고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3. 또한, 전국적으로 도선선료가 인상되므로 해당 조정 시행('26.7.1) 전 국적·외국적선사, 대리점, 화주 등에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인

주무관 이진희 행정사무관 이정규 과장 전결 2026. 06. 25. 정동원
협조자
시행 항만물류산업과-2889 (2026. 06. 25.) 접수 M00019854973 (2026. 6. 25.)
우 48755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/ http://www.mof.go.kr
전화번호 051-773-5772 팩스번호 051-773-5789 / ljh9771@korea.kr / 비공개(5)

도선선료 변경사항 대비표

「도선료 및 도선선료 신고사항」【별표 2】 도선선료(구 시행규칙 20조 관련)

□ 도선선료

도선선 운항거리	도 선 선 료		비 고
	현 행	**변 경**	
3해리 이하	○ 7만1천580원	○ **7만7천980원**	
3해리 초과	○ 3해리를 초과한 매 1해리(1해리 미만은 1해리로 계산한다)마다 7천80원(단, 마산, 대산항 도선구는 9천80원으로, 인천·여수·평택·목포항 도선구는 8천310원으로 한다)	○ 3해리를 초과한 매 1해리(1해리 미만은 1해리로 계산한다)마다 **7천710원**(단, 마산, 대산항 도선구는 **9천890원**으로, 인천·여수·평택·목포항 도선구는 **9천50원**으로 한다)	